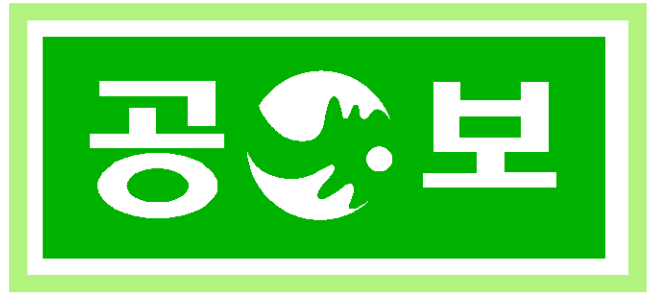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기 관	기 관 의 장



제 723 호 2011. 12. 7(수)

공 고
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757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2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- 757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2월 7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-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·전시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급·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직급·직렬별 정원조정

○ 정원조정

- 7급 : 132명 → 133명(증 1)
 - 행 정 : 63명 → 64명
- 8급 : 138명 → 137명(감 1)
 - 행 정 : 55명 → 54명

3. 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1년 12월 12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202, fax 219-721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 구 기획홍보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